

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호식

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이옥규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2월 26일
- 회부일자 : 2019년 2월 27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 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,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(안 제3조)
 -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
- 국제문화교류 계획 수립 및 시행 (안 제4조)
- 충청북도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(안 제5조)
-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 내용 (안 제8조)
- 비영리 단체나 법인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,

활동 또는 시설에 대한 경비 지원 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, 충청북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임.
-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지난 2017년에 제정되었으며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타 시도의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, 5개의 광역 시도(광주, 대전, 세종, 경기도, 제주도)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. 앞으로 더욱 활발한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,
-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3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에서는 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충청북도 국제문화 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.
 - 안 제8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이나 도 내 시·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사업, 전문인력 양성 사업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음.
 - 안 제9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연구·학술 사업 및 활동 등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음.
- 충청북도에서는 자매도시인 중국 흑룡강성, 일본 야마나시현,

베트남 빈곤횟성과 문화, 체육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, 이러한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확대,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도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- 현재 충청북도에서 진행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의 국제문화교류사업과 민간단체의 국제문화사업을 포함한 계획수립, 민간 전문가 육성 등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며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. 끝.